



동아대학교와 (주)KEB하나은행 간의 산학협력을 위한 협약서

동아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와 (주)KEB하나은행 하단지점(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협약(이하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은행'은 '대학교'에 발전기금을 지급하고 '대학교'는 '은행'과의 금융거래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그 기본정신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협약내용) ① '대학교'는 '은행'과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거래 은행으로 한다.
② '대학교' 및 '은행'은 거래에 따르는 발전기금 지급 및 금융거래 확대 등 업무협약의 세부사항에 관한 부속협약을 별도로 체결하기로 한다.

제3조(신의와 성실) '대학교' 및 '은행'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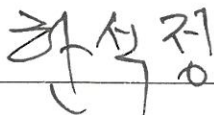
제4조(효력발생) 본 협약은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계속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기타)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9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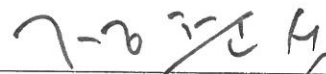
동 아 대 학 교

총 장 한 석 정



(주)KEB하나은행 영남영업그룹

대 표 정 춘 식





동아대학교
DONG-A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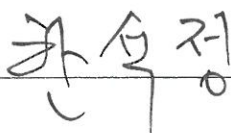
동아대학교와 (주)KEB하나은행 간의 부속 협약서

동아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와 (주)KEB하나은행 하단지점(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2017. 09. 25.자로 체결한 '발전기금 등에 관한 협약서' 제2조 제2항에 따라 협약의 세부 이행사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은행'은 '대학교'에 5천만원의 발전기금을 현금으로 기증한다. 다만, 시중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변동상황 발생시 발전기금 지급액은 변경될 수 있다.
2. '대학교'의 등록금 수납계좌(가상계좌 포함)는 '은행' 관리계좌로 지정할 수 있다.
3. '대학교'는 여유자금을(정기예금 등) '은행' 계좌로 예치하는 데 적극 협력한다.
4. '대학교'는 외환거래(외국인 학생 관련 사항 포함)를 '은행' 으로 거래하는 데 적극 협력한다.
5. 대학교 교직원 급여이체, 법인신용카드(복지카드등) 신용대출을 '은행' 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6. '대학교'의 대학생등록금 카드, 교수대상 연구비 지원카드, 국제학생증카드, 학생증카드(모바일등) 발급 및 수납시에는 '은행'과 적극 협력한다.
7. '대학교'는 국가장학금 수령계좌를 '은행' 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2017년 9월 25일

동 아 대 학 교
총 장 한 석 정



(주)KEB하나은행 영남영업그룹
대 표 정 춘 식

